

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6일

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



1.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

임용 등급	임용 분야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예정 부서	담당직무 내용
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(8급 상당)	교육	1명	1년 (주35시간)	미래교육과 (노원수학문화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수학문화관 전시관 시설 운영 및 지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행사성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체험수학 콘텐츠 개발 및 지원체험수학 강의 및 전시해설기타 노원수학문화관 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의3 (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)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. 응시 자격 요건

○ 응시 자격(공통) (**※ 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**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 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 라 한다)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 <신설 2022. 1. 4.>
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-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지역·성별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임용분야 응시 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(※ 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※ 응시희망자는 자격 및 경력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

구분(등급)	응시 자격 요건
필수요건 (라급)	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◇ 우대요건 : 이력서란에 기입 및 증빙 자료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학 및 수학교육 분야 전공자 · 초등(수학전공 또는 수학심화과정 이수), 중등수학 교원 자격증이 있는 자

※ 임용예정 직무분야 : 수학 및 수학교육, 수학분야 콘텐츠 연구 개발 관련 기관 등에서 “수학 관련 업무”로 근무한 실무경력

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5항)

※ 경력증명서상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와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인정 (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, 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

4.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

- 임용기간 :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
 - ※ 실적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내에서 임용 기간 연장 가능
- 근무조건 : 주 35시간 근무
 - ※ 시설 여건상 주말 중 1일, 월요일 휴무(공휴일 근무시 평일 중 대체휴무)
- 보수수준
 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임용등급에 상응하는 보수 범위 내에서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최초 채용 시에는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.
 - ※ 아래 금액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관련)] (연봉액, 단위:천원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	근무 시간 적용시 기본연봉액
시간선택제임기제 '라' 급	62,096	44,296	38,759천원 (44,296천원 × 35/40)

-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 포함) 가입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- 응시원서 접수
 - 가. 접수기간 : 2026. 5. 26.(화) ~ 6. 4.(목)(5.30~31. 공휴일, 6.3. 선거일 제외)
 - 나. 접 수 처 : 노원구청 미래교육과 교육정책팀 (노원평생교육원 3층)
 - 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 ※ 택배, 퀵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
 - 방문접수는 근무시간(평일 09:00~18:00/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 내에 직접 제출
 -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 해 유효함
 - 주소 : 우(01762)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7길 48, 노원평생교육원 3층 미래교육과 교육정책팀
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- ※ 노원구 수입증지(수수료 5,000원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(우편 접수 시 라급 5,000원 상당 우편환 반드시 송부)
 - ※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, 송부 후 반드시 사전에 확인 전화 요망(02-2116-3243)
 - ※ 대리접수,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표

내용	일정	비고
채용계획 공고	2026. 5. 26. ~ 6. 4.	
응시원서 접수	2026. 5. 26. ~ 6. 4.	노원평생교육원 3층 미래교육과 교육정책팀
1차 서류전형	2026. 6. 8.	
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6. 9.	
2차 면접시험	2026. 6. 16. 16:00(예정)	노원구청 5층 기획상황실
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6. 6. 18.	
임용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등	2026. 6. 18.~	
임용예정일	2026. 7. 1.	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가. 1차 서류전형

- 접수된 응시원서 등 관련 제출서류 확인 후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면접심사 :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고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고득점자로 하며, 관계법령에 따라 신체검사, 신원조회 및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며, 노원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.

다. 면접심사합격자 발표 : 합격자 개별 통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고
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라. 임용예정일 : 2026. 7. 1.(예정)

6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사항)

- 응시원서 1부(첨부1)

- 응시수수료 : 라급 5,000원 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(노원구청 2층 재무과에서 구매)
- ※ 수입증지 구매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, 우체국에서 라급 5,000원 상당 우편환 구입 후 송부
- 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력서 1부(첨부2)

- ※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<http://www.nhis.or.kr> 발급, 보험가입 전체기간,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 1부(첨부3)

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(첨부4)

○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1부(첨부5)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6)
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7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 1부

○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경력증명서는 원본에 한해 인정

- ※ 근무기간, 근무시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기관 직인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,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
- ※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○ 최종학력 졸업증명서,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- ※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 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○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면허증 ·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하며, 상기 제출서류 중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※ 폐업기관의 경우 :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텍스 발급 가능),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* ①, ② 모두 제출
 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개 선택

7. 기타(유의) 사항

- 원서 접수 시 노원구 홈페이지(www.nowon.kr) - [채용공고] 에서 첨부파일 (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)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.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.
- 적격자가 없을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증 1개),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.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.
- 문의 : 노원구청 미래교육과 (☎ 02-2116-3243)